

프랑스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권채리



지역법제 Issue Paper 16-16-④

프랑스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권 채 리

프랑스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Legislative Issues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France

연구자 : 권채리(부연구위원)
Kwon, Cherry

2016. 11. 30.

목 차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영유아 보육제도	7
I. 개 관	7
II. 연령별 영유아 보육제도	8
1. 0~6세 영유아 보육	8
2. 3~6세 영유아 보육	9
III. 영유아 보육지원 관련 법제	10
IV. 소 결	13
제 3 장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행정적 개입	15
I. 아동보호의 개념	15
II. 영유아보호 전문기관	16
1. 개 관	16
2.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Observatoire national de l'enfance en danger)	17
3.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Service National d'Accueil Téléphonique pour l'Enfance en Danger, SNATED)	20
4. 피위험 아동을 위한 공익연합체(Groupement d'intérêt public enfance en danger ; GIPED)	21
5.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	21
III. 소 결	22

제 4 장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23
I. 민법상 제도	23
1. 교육부조(assistance éducative)	23
2. 친권의 위임(délégation de l'autorité parentale)	24
3. 친권의 상실(retrait de l'autorité parentale)	25
II. 형법상 제도	28
1. 친권상실 신고	28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	28
III. 소 결	29
제 5 장 결 론	31
I. 정 리	31
II. 시사점	33
참 고 문 헌	35

제1장 서론

- 최근 가정 및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상대로 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영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는 1789년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1793년에 입법¹⁾을 통해 유기아동에 대한 국가의 피후견인 지위를 선언함을 통해 유기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공고히 하였음.
- 이후 19세기 후반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래 아동구제에 관한 법제는 끊임없이 발달함. 특히 2000년에 설립된 독립행정기관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의 설립으로 아동의 복리는 한층 더 증진됨.
- 한편, 프랑스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과로가 학대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이의 인원을 법으로 제한하고 또한 어린이집엔 아이를 돌보는 교사 외에 교육전문가가 별도로 의무적으로 있어야 함.
- 또한 응급사고를 대비하여 원장은 의료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음. 이 밖에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은 소아과 의사와 심

1) Le décret-loi du 28 juin 1793 adopté par la Convention, faisant obligation à la Nation de se charger de « l'éducation physique et morale des enfants connus sous le nom d'enfants abandonnés

리학자 등에게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등 영유아 학대방지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선진 입법례를 보유하고 있음.

- 영유아 학대방지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Observatoire national de l'enfance en danger, ONED) 등 아동보호기관이 발달되어 있음.
 -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을 비롯하여 민법, 형법 등에서 영유아 학대방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함.
- 아동학대는 가정과 보육시설 양쪽에서 발생하는바 영유아의 학대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보육지원 정책 및 법제를 먼저 살펴본 후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정책 및 입법현황을 분석함.
- 프랑스의 입법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방지 입법 및 제도 운영에 참고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 2 장 영유아 보육제도

I. 개 관

- 프랑스는 종교와 인종의 구분없는 평등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가 직접 아동의 보육에 개입하는 공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²⁾
- 이를 통해 프랑스의 보육·유아교육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고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며 모든 아동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은 연령을 기준으로 만3세 미만 에 대한 영아보육지원과 만3~6세의 유아교육지원으로 구분됨.³⁾ 즉,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소(crèche) 및 만 3~6세의 유아가 취학하는 유아원(école maternelle)과 유아학교 (classe enfantine)로 이원화되어 있음.
- 특히 프랑스의 탁아소는 종일제 서비스로서 자녀 출산 후 육아 휴직없이 계속 근무하는 여성에게 유용한 제도임. 만3~6세 유아 교육은 초등학교 취학 전 준비과정으로 모든 유아는 무상으로 유아교육의 권리를 누림.
- 따라서 탁아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며 가족수당기금 (Caisse National d'Allocation Familiales, CNAF)에서 관할함. 즉 가족수당기금은 가족수당지급처(Caisse d'allocation familiale, CAF)

2) 조희연, “저출산과 프랑스 영유아교육·보육 협력 사례 연구”, 여성연구 제81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242면.

3) 프랑스에서는 영아, 유아, 아동을 모두 ‘enfant’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연령을 함께 명시함. 본고에서는 편의상 만3세 미만은 영아로, 만3~6세는 유아로 표기함.

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보육시설을 건립, 운영하게 함.

- 영유아의 연령별 이원화 정책은 관할부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만3세 미만의 영아보육은 노동, 일자리, 직업교육과 노사협상부(部)가 담당하며, 공교육의 초기단계로 보는 만3~6세의 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관할함.

II. 연령별 영유아 보육제도

1. 0~6세 영유아 보육

-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보통 만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아원을 다니는 만3세~6세의 유아를 포함하기도 함.
- 영유아 보육기관은 크게 공립과 사립, 보육유형에 따라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설보육기관으로는 탁아소, 아동정원(만2~6세의 유아를 보육하는 정시제 보육기관), 시간제유아원이 있음.
 - 가정보육기관으로는 가족유아원이 있음.
 - 그 외에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겸하거나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보육시설이 있음.
 - 개인보육 유형으로는 등록보육모, 가정보모가 있음.
- 종일제 시설 보육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되며, 전업주부는 시간제유아원(haltes-garderies)을 이용할 수 있음.

표1. 유형별 보육기관 (0~6세)

보육형태	기 관	대상연령	아동비율
시설보육 (accueil collectif)	탁아소(crèche collective) - 전통/지역탁아소(crèche traditionnelles/ de quartier) - 직원탁아소(crèches de personnel) - 부모협동 탁아소(crèches parentales)	0~3세	32%
	시간제유아원(haltes-garderies)	0~6세	
	아동정원(jardin d'enfant)	2~6세	
	혼합보육기관(établissements multi-accueil)	0~6세	
	소형탁아소(mini-crèche micro-crèche)		
	종일탁아소(jardin d'éveil)	2~3세	
가정보육 (accueil familial)	가정탁아소(crèche familiale)		
개인보육 (accueil domicile)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0~6세	63%
	가정보모(nounou à domicile)		5%
	부모양육(parents)		

출처 :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2007 ; Bailleau Guillaume, L'accueil collectif et en crèches familiales des enfants de moins de 6ans en 2005, Etudes et résultats n° 548, Drees, 2007 ; 조희연, 전계논문, 244면 재인용(일부 번역 수정).

2. 3~6세 영유아 보육

-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님. 그러나 무상교육이므로 만3세의 유아의 취학률은 100%라 할 수 있음. 교육법전은 만3세

의 모든 유아는 가족이 요청할 경우 유아원(école maternelle) 또는 유아학교(classe enfantine)에 취학할 수 있다고 규정함.⁴⁾ 대부분의 유아원은 공립이며 사립의 경우 부모에 소득에 따라 학비를 부담함.

Ⅲ. 영유아 보육지원 관련 법제

- 프랑스의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법제는 크게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및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계층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전에서는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하여서는 가족수당과 영아 보육사 고용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정하고 있음.

4) Les classes enfantines ou les écoles maternelles sont ouvertes, en milieu rural comme en milieu urbain, aux enfants qui n'ont pas atteint l'âge de la scolarité obligatoire. Tout enfant doit pouvoir être accueilli, à l'âge de trois ans, dans une école maternelle ou une classe enfantine le plus près possible de son domicile, si sa famille en fait la demande.

Dans les classes enfantines ou les écoles maternelles, les enfants peuvent être accueillis dès l'âge de deux ans révolus dans des conditions éducatives et pédagogiques adaptées à leur âge visant leur développement moteur, sensoriel et cognitif, précisées par le ministre chargé de l'éducation nationale. Cet accueil donne lieu à un dialogue avec les familles. Il est organisé en priorité dans les écoles situées dans un environnement social défavorisé, que ce soit dans les zones urbaines, rurales ou de montagne et dans les régions d'outre-mer.

Dans ces classes et ces écoles, les enfants de moins de trois ans sont comptabilisés dans les prévisions d'effectifs d'élèves pour la rentrée. (art.L113-1, code de l'éducation)

프랑스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의 가족수당 및
영아 보육사 고용지원에 관한 규정

제5권 가족수당 및 유사수당

제1부 적용범위

- 제1장 수당의 종류
- 제2장 적용범위
- 제3장 수당의 규칙과 지급

제2부 가족부양을 위한 수당

- 제1장 가족수당
- 제2장 가족보조금
- 제3장 가족 부양수당
- 제4장 한부모 수당

제3부 영아보육을 위한 수당

- 제1장 영아보육수당 관련 일반규정
- 제2장 다른 수당과의 중복지급과 관련한 규정
- 제3장 엄마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련한 규정

제4부 특별하게 할당된 수당

- 제1장 장애아 교육수당
- 제2장 가족 주거수당 - 이사보조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금
- 제3장 개학수당
- 제4장 가족 간호수당

제5부 공통적인 규정

- 제1장 기초적인 급여확립
- 제2장 수당 서비스
- 제3장 다양한 규정
- 제4장 벌칙

제8부 부양비 채권회수

제1장 부양비 채권회수와 관련된 조항

제3장 다양한 규정

제4장 적용규정

제8권 고령자 수당, 성인장애인 수당, 사회주거수당,
영아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시설의 일시적 지원

제4부 영아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에 대한 지원

제1장 인가된 보육사 교육을 위한 가족지원

제2장 가정 내 보육을 위한 수당

제3장 영아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 지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은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 계층 등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 관련하여서는 영아보육시설과 보육도우미·가족도우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이 밖에 자녀 돌봄 서비스, 가족 돌봄, 그리고 사회부조 차원에서 취약아동 및 위험 청소년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내용도 포괄하고 있음.

프랑스의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의 보육시설 및 개인보육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권 일반적인 규정
제1부 일반원칙
제2장 가족정책
제2권 다양한 유형의 사회부조와 사회활동
제1부 가족
제4장 영아보육시설
제4권 사회활동 전문가
제2부 보육 도우미와 가족 도우미
제3장 민간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도우미와 가족도우미
제4장 보육사의 집

IV. 소 결

- 프랑스에서는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한 수당정책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을 국가의 사회보장이라는 큰 틀 아래 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반면 우리나라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인 법체계를 통해 집행되기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제약이 있음.⁵⁾

5) 신윤정,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의 법제 현황 및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3, 71-72면.

표2.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관련 법률

구 분	정 책	관련 법률
보육서비스	시설 보육 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재가 보육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
수당	입양아동 서비스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법
	초중고등학교 교육	초중등교육법

출처 : 신윤정, 전계논문, 72면 재인용

제 3 장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행정적 개입

I. 아동보호의 개념

-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적정의를 없으나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에서 정하는 내용을 통해 친권자에 의한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또는 미성년자)에 행하여지는 공권력의 개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는 넓은 의미에서 아동보호는 “사회적 서비스나 공공정책 부분, 사회적 폭력 및 미성년 범죄, 빈곤, 사회적 또는 직업적 배제나 차별, 학교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불만족, 사이버 범죄와 고립된 외국 아동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처한 모든 상황 안에서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⁶⁾
- 프랑스에서는 민법전과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에서 ‘학대’(maltraitance)라는 개념을 이중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아동보호의 개혁에 관한 2007년 법에서 ‘학대’와 ‘위험’(danger)의 개념을 재정립함. 즉 민법상의 미성년자 교육부조 조치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인 발달이나 교육적 조건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경우’를 위험으로 보고 이를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명칭 및 법에 반영하여 아동의 보호기준을 확대함.

6) 안문희, “프랑스 아동보호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12면.

II. 영유아보호 전문기관

1. 개 관

- 프랑스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데파르트망)에 설치된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와 아동학대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 그리고 이 두 기관을 운영·관리하는 ‘피위험 아동을 위한 공익연합체’가 있음.
-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는 미성년자 학대예방과 아동 보호에 관한 1989년 7월 10일자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음.
 - 1989년 법은 학대방지에 관한 규정 외에 직업교육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음. 즉 의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종사자, 사회복지사, 법관, 교육자, 경찰, 헌병은 학대받는 아동에 요구되는 예방,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함(제3조).
 - 동법 제3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학대의 피해자인데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이거나 가족이 명백하게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센터(Aide sociale à l'enfance)의 개입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데파르트망의 장은 지체없이 사법기관에 알려야 함. 이 조항은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으로 편입되었음.
-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는 아동의 수용과 보호에 관한 2004년도 1월 2일자 법률에 의해 설립됨.
- 아동보호의 개혁에 관한 2007년 3월 5일자 법률은 다음의 사항을 정함.

-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의 업무범위의 확대
 - ‘학대’는 ‘아동의 보호’로, ‘학대받는 아동’은 ‘위험에 처한 아동’으로 수정. 이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 역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로 명칭이 변경됨.
 -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사법적 조치의 재정비
 -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센터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중앙 피위험 아동 관찰소와 데파르트망 피위험 아동 관찰소로 전달
- 1956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의 제정 당시의 명칭은 「가족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전」이었음.
- 2000년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이전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게 수록했으나 순서를 달리하였음.
 -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의 다양한 형태에 관한 제4권의 제2부 아동편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장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의 보호와 위급한 정보수집에서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Observatoire national de l'enfance en danger)

- 프랑스는 2004년도에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Observatoire national de l'enfance en danger, ONED)를 설립함.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Service National d'Accueil Téléphonique pour l'Enfance en Danger)와 마찬가지로 피위험 아동 공익연합(Groupement d'intérêt public Enfance en danger)에서 관리함.

-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의 조직 및 운영은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 제2권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의 다양한 형태, 제2부 아동편의 제6장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의 보호와 위급한 정보수집 (제226-1조~제226-13조)에서 정하고 있음.

제2권 다양한 유형의 사회부조와 사회복지

제2부 아동

제1장 아동사회복지시설

제2장 아동사회복지수당

제3장 아동사회복지시설과 가족의 권리

제4장 국가가 후견인인 고아

제5장 입양

제6장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의 보호와 위급한 정보수집

제7장 가정이 아닌 곳에 거처를 정한 미성년자

제8장 재정 관련 규정

(1) 목 적

- 아동의 수용과 보호에 관한 2004년도 1월 2일자 법률⁸⁾에 의해 설립된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의 주 목적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실태를 잘 파악함에 있음.
-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는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및 신속한 후속 조치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며 그 밖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음.

7) 종래에는 공공부조(assistance publique)로 표현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부조(aide sociale)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쓰고 있음.

8) Loi n° 2004-1 du 2 janvier 2004 relative à l'accueil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J.O. n°2 du 3 janvier 2004, p.184.

- 아동보호에 관한 객관적 자료수집
 - 예방, 진단, 책임에 관한 관련 사례조사
 - 연구조사의 확대
 - 학술자료 보급
 - 유럽의 관련 기관과의 공조
 - 아동보호 업무 종사자를 및 연구자를 위한 디지털자료실센터 역할
- 아동보호의 개혁에 관한 2007년 3월 5일자 법률⁹⁾이 제정됨에 따라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의 업무는 확대됨. 동시에 ‘학대’(maltraitance)와 ‘학대받는 아동’의 용어는 각기 ‘아동의 보호’(protection de l'enfance) 또는 ‘위험에 처한 아동’(d'enfants en danger)으로 수정됨.
- 그러나 ‘위험’이 아동학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에 처한 아동에 학대받는 아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¹⁰⁾

(2) 운 영

- 1983년 지방분권법에 따라 복지사무가 데파르트망(département)으로 이관됨에 따라 피위험 아동 관찰소 또한 중앙 피위험 아동 관찰소 외에 데파르트망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데파르트망에 소속된 관찰소의 설치 및 운용비용은 국가와 데파르트망이 균등하게 부담함.

9) Loi n° 2007-293 du 5 mars 2007 réformant la protection de l'enfance, J.O., n°55 du 6 mars 2007 p.4215.

10) 안문희, 전개논문, 16면.

- 데파르트망 의회(conseil général)의 의장이 실질적으로 피위험 아동 관찰소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3.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Service National d'Accueil Téléphonique pour l'Enfance en Danger, SNATED)

-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Groupement d'intérêt public Service National d'Accueil Téléphonique pour l'Enfance en danger)는 미성년자 학대예방과 아동보호에 관한 1989년 7월 10일자 법률¹¹⁾에 의해 설립되었음.
- 본래 명칭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Service National d'Accueil Téléphonique pour l'Enfance maltraitée)였으나 2007년 학대받는 아동(enfance maltraitée)을 위험에 처한 아동(enfance en danger)으로 수정되었음.
-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별도의 요금청구는 없음.
- 아동보호의 개혁에 관한 2007년 3월 5일자 법률에서 아래의 세 가지 임무를 명시함. 즉, 전화신고를 접수하고(accueillir), 관련 정보를 데파르트망 의장에 전달하며(Transmettre),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행동하는 일련의 세 단계를 일컬어 ATA로 부름.
 - 위험에 처한 아동 또는 위급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전화신고를 받음(Accueillir).

11)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J.O., n°0163 du 14 juillet 1989 p.8869.

-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접수된 아동 관련 정보를 데파르트망 의회의 장에게 전달함(Transmettre).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Agir).
- 미성년자·아동을 수용하는 모든 시설은 이 콜센터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함.

4. 피위험 아동을 위한 공익연합체(Groupement d'intérêt public enfance en danger ; GIPED)

- 피위험 아동을 위한 공익연합체(Groupement d'intérêt public enfance en danger)는 아동보호 관련 공법인 및 사법인 등이 연합하여 구성된 기관임.
- 이 연합체는 전술한 국립 피위험 아동 관찰소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 이 두 기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피위험 아동을 위한 공익연합체의 이사회는 국가, 데파르트망 및 사단법인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에는 열 개의 중앙부처, 열 다섯 개의 데파르트망 대표, 다섯 개의 아동보호 관련 사단법인 등을 포함함.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동보호 관련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5.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

- 프랑스는 2000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아동의 기본권을 준수하고자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을 설립함.¹²⁾ 아동

12) Loi n°2000-196 du 6 mars 2000 instituant un Défenseur des enfants.

보호관은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에 따른 것이며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아동보호관은 개인과 기관 등에서 제소한 경우 외에도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에서 정함.
- 2008년 개정헌법¹³⁾에 따라 아동보호관은 공화국 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 반차별과 평등을 위한 고등청(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Egalité, HALDE) 그리고 국가안전윤리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 CNDS)와 통합되어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으로 신설됨. 권리보호관은 종래의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보완하여 그 권한과 지위가 강화된 헌법기관임.

Ⅲ. 소 결

- 피위험 아동 관찰소는 중앙과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됨. 우리나라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데파르트망)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직접 사법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¹⁴⁾
- 아동보호관은 2008년에 권리보호관으로 흡수되었음. 권리보호관은 독립성 및 지위 측면에서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위상을 지님.

13) “권리보호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71-1조 제1문) 권리보호관에 대한 신청절차 및 요건, 권리보호관의 권한과 개입방식 등에 관하여는 조직법에서 정함.(제71-1조 2-3문)

14) 여하운, 전개논문, 168면.

제 4 장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I. 민법상 제도

1. 교육부조(assistance éducative)

- 프랑스의 교육부조 조치는 아동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소년비행과 교육부조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법관인 아동사건 전담 법관(juge des enfants)의 명령으로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음.
- 교육부조의 청구는 부모, 아동보호기관(개인도 가능), 후견인, 본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르나 판사 직권으로도 가능.
- 프랑스 민법은 교육부조와 관련하여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심리 등이 위험한 상태이거나 그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성 등의 발육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경우, 부와 모, 혹은 그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미성년자를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후견인이나 미성년자 자신, 혹은 검찰의 청구에 의하여 교육부조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민법전 법률편 제375조 제1문).¹⁵⁾

15) Si la santé, la sécurité ou la moralité d'un mineur non émancipé sont en danger, ou si les conditions de son éducation ou de son développement physique, affectif, intellectuel et social sont gravement compromises, des mesures d'assistance éducative peuvent être ordonnées par justice à la requête des père et mère conjointement, ou de l'un d'eux, de la personne ou du service à qui l'enfant a été confié ou du tuteur, du mineur lui-même ou du ministère public. Dans les cas où le ministère public a été avisé par le président du conseil départemental, il s'assure que la situation du mineur entre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L. 226-4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Le juge peut se saisir d'office à titre exceptionnel.(Code civil, art.L375, al.1)

- 교육부조 조치는 크게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둔 상태에서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재택원조조치(action éducative en milieu ouvert)와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격리시켜 시설 등에 위탁하는 위탁조치(mesure d'accueil) 외에,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아동에게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하며 사안에 따라 법관이 정함. 단, 법관은 기간을 특정하여야 하며 특정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동에 대한 교육부조 비용은 부모 및 직계존속이 부담하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시킬 수 있음.
- 교육부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자녀에 대한 입양동의권, 혼인동의권 등을 그대로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친권의 위임이나 친권상실과 차별성을 가짐.

2. 친권의 위임(délégation de l'autorité parentale)

- 친권의 위임은 친권의 행사를 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판결을 통해서만 인정됨. 그러나 별도의 아동사건 전담 법관의 관할인 교육부조와는 달리 가사사건임.¹⁶⁾
- 친권의 전부위임과 일부위임이 있으며 친권자인 부모가 청구하는 자발적 위임(délégation volontaire)과 친권을 위임받기 원하는 자가 청구하는 강제적 위임(délégation forcée)이 있음.¹⁷⁾

16) 박주영,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3호, 안암법학회, 2010, 167면.

17) 박주영, 전제논문, 167면.

3. 친권의 상실(retrait de l'autorité parentale)

- 교육적 부조조치를 취하고 있어도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음. 즉 아동학대 시 교육부조 조치가 우선적으로 행사되기는 하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는 교육부조와 친권상실 조치는 양립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친권 전부상실과 일부상실이 있는데 전부상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1) 요 건

- 민법전에서 친권상실의 요건을 전부상실과 일부상실의 경우 달리하여 정하고 있음.
 - 전부상실 : 부모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아동이 범한 범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민법전 제378조 1문)¹⁸⁾
 - 전부상실 : 자녀학대, 상습적 알콜 중독·향정신성물질 과도섭취, 불법적 비행 등으로 자녀의 안전, 건강, 심리 등이 명백하게 위협에 처하게 된 경우(제378-1조 제1문)¹⁹⁾

18) Peuvent se voir retirer totalement l'autorité parentale par une décision expresse du jugement pénal les père et mère qui sont condamnés, soit comme auteurs, coauteurs ou complices d'un crime ou délit commis sur la personne de leur enfant, soit comme coauteurs ou complices d'un crime ou délit commis par leur enfant, soit comme auteurs, coauteurs ou complices d'un crime sur la personne de l'autre parent.(Code civil, art.L378, al.1)

19) Peuvent se voir retirer totalement l'autorité parentale, en dehors de toute condamnation pénale, les père et mère qui, soit par de mauvais traitements, soit par une consommation habituelle et excessive de boissons alcooliques ou un usage de stupéfiants, soit par une inconduite notoire ou des comportements délictueux, notamment lorsque l'enfant est témoin de pressions ou de violences, à caractère physique ou psychologique, exercées

제 4 장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 일부상실 : 교육 부조조치 중인 자녀에 대해 부모의 친권, 통신·방문권의 행사와 의무를 고의로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78-1조 2문)
- 친권의 전부상실은 검사, 친족구성원 또는 자녀의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짐(제378-1조 3문).²⁰⁾
- 친권 중 특정부분에 대해서 일부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정함.

(2) 효 과

- 친권상실은 친권 자체가 상실되며 권리회복청구제도를 통해서만 친권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친권의 행사가 박탈되는 친권의 위임에 비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임.

표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친권상실제도

	우리나라	프랑스
친권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상실 또는 일시정지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 전부상실 요건 - 부모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아동이 범한 범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par l'un des parents sur la personne de l'autre, soit par un défaut de soins ou un manque de direction, mettent manifestement en danger la sécurité, la santé ou la moralité de l'enfant.(Code civil, art.L378-1, al.1)

20) L'action en retrait total de l'autorité parentale est portée devant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oit par le ministère public, soit par un membre de la famille ou le tuteur de l'enfant, soit par le service départemental de l'aide sociale à l'enfance auquel l'enfant est confié.(Code civil, art.L378-1, al.3)

	우리나라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의 상실은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친권의 일시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음(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학대, 상습적 알콜 중독·향정신성물질 과도섭취, 불법적 비행 등으로 자녀의 안전, 건강, 심리 등이 명백하게 위협에 처하게 된 경우 ○ 청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친족구성원 또는 자녀의 후견인 ○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동의권, 혼인동의권의 상실
일시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 일부제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청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 일부상실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부조조치 중인 자녀에 대해 부모의 친권, 통신·방문권의 행사와 의무를 고의로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친권을 상실하면 입양동의권, 혼인동의권 등을 상실함. 자녀 부양의무와 양육비용지급의무는 존속하나(민법전 제203조) 반대로 자녀는 친권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상실함(제379조 제2문).

II. 형법상 제도

1. 친권상실 신고

-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녀에 근친상간을 범한 경우 형사법원은 민법전의 친권의 전부상실 또는 일부상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해야 함(형법전 제227-27-3조 제1문).²¹⁾
- 프랑스의 형사법원에 의한 친권상실 제도는 별도의 민사소송·가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 유죄판결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국내 아동학대 방지 법제에 참고할 가치가 큼.²²⁾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

-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연령,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 임신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약자에 대하여 감금, 학대, 성폭행 등이 행하여진 사실을 알고도 법원이나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3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형법전 제 434-3 제1문).²³⁾

21) Lorsque l'atteinte sexuelle incestueuse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 sur le mineur, la juridiction de jugement doit se prononcer sur le retrait total ou partiel de cette autorité en application des articles 378 et 379-1 du code civil.(Code pénal, art.L227-27-3, al.1)

22) 여하윤, “프랑스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 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17-118면.

23) Le fait, pour quiconque ayant eu connaissance de privations, de mauvais traitements ou d'agressions ou atteintes sexuelles infligés à un mineur ou à une personne qui n'est pas en mesure de se protéger en raison de son âge, d'une maladie, d'une infirmité, d'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d'un état de grossesse, de ne pas en informer les autorités judiciaires ou administratives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 위의 신고의무는 신고의무 대상자(미성년자의 학대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quiconque ayant en connaissance))와 위반 시 처벌수위 모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상의 신고의무보다 엄격함.

Ⅲ. 소 결

- 프랑스는 친권상실 제도와 별도로 아동사건 전담 법관의 관할 아래 위험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교육부조 조치를 두고 있음.
- 부모가 근친상간을 포함한 아동 관련 범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미성년자 가중처벌 대상 범위나 수위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엄격함.

45 000 euros d'amende.(Code pénal, art.L434-3, al.1)

제 5 장 결 론

I. 정 리

- 프랑스는 1983년 꼬뉘, 데파르트망, 레지옹과 국가 간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²⁴⁾ 제정을 통해 기존에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사회복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었음.
- 이에 따라 아동복지를 포함한 질병, 산재, 노인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데파르트망이 담당하게 되었고, 데파르트망 산하에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세워짐.
- 프랑스의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 민법전, 형법전 모두 연령별로 영아, 유아, 아동, 미성년자로 구분하지 않으며 아동(enfant), 미성년자(mineur)로 표현함.
-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제도는 연령을 기준으로 크게 만3세 미만에 대한 영아보육지원과 만3~6세의 유아교육지원으로 구분되며, 만 3~6세의 유아교육은 초등학교 준비과정으로 보아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무상교육 제도임.
 -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제 보육시설이 제공되고 전업주부를 위한 시간제유아원도 운용됨.
 - 이와 같이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국가가 직접 아동의 보육에 개입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를 보호함.

24)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J.O. du 9 janvier 1983, p. 215 complétée par la loi n° 83-663 du 22 juillet 1983, J.O. du 23 juillet 1983, p.2286.

- 가족수당, 보육시설 등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은 사회보장법전과 사회복지와 가족에 관한 법전에서 규율되고 있음. 따라서 보육서비스, 수당, 교육 등에 있어 개별적인 법체계를 통해 집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통합적인 국가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의 아동보호는 전문기관을 통한 행정적 보호와 민법·형법상의 제도로 이루어짐.
 -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피위험 아동 관찰소가 각 데파르트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데파르트망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사법기관에 직권으로 통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음.
 -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국립콜센터의 역할 또한 단순히 전화 신고를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지자체 장에게 전달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세 단계의 절차까지 포함함.
 - 피위험 아동을 위한 공익연합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뿐 아니라 아동보호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 등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효율성을 높임
 - 2008년의 개정헌법에서 도입된 권리보호관의 조직과 위상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 시 보다 신속한 결정과 구제가 가능함.
- 프랑스에서 아동보호는 일차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행정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법적 개입은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되나 현실적으로는 사법적 조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프랑스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노력은 2007년 아동보호의 개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 법령의 ‘학대’라는 표현을 ‘위험에 처한 상태’로 개정한데서 엿볼 수 있음. 즉 학대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상태를 보다 확실히 담보함.
- 프랑스의 친권상실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이와 별도로 아동사건 전담 법관의 관할 아래 위험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교육부조 조치를 두고 있음.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한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가중 처벌에 있어서도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한 상태’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새김으로써 아동의 보호에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여짐.
- 부모가 아동 관련 범죄행위를 행하였거나 근친상간을 범한 경우 별도의 민사·가사소송 절차없이 형사 유죄판결로 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는 제도는 국내 아동학대 방지 법제에 참고할 가치가 큼.

II.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위험에 포함하여 국가가 자녀양육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유아 보육지원을 국가 사회보장의 핵심영역이자 출발점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

제 5 장 결 론

함을 통해 가정 내에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및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 및 학대방지 관련한 법령을 보다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를 보호해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행정적 보호와 민법·형법상의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

참 고 문 헌

강홍진,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2, 11~24면.

박주영,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3호, 안암법학회, 2010, 141~177면.

신윤정,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8면.

신윤정,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의 법제 현황 및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3, 61~73면.

안문희, “프랑스 아동보호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5-39면.

여하윤, “프랑스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 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63~183면.

조희연, “저출산과 프랑스 영유아교육·보육 협력 사례 연구”, 여성연구 제81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237~269면.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스템 개관, 국회사무처, 2013, 9면.

Bailleau Guillaume, L'accueil collectif et en crèches familiales des enfants de moins de 6ans en 2005, Etudes et résultats n° 548, Drees, 2007.

www.caf.fr

www.legifrance.gouv.fr

<http://social-sante.gouv.fr/>